폭행 및 폭력 위협 – 처벌 및 규정에 대한 통지

KRS 158.1559는 KRS 508.078의 규정(학교 관련 인물, 학교 내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 또는 학교 운영에 대한 위협을 범죄로 간주함)에 대해, 수업 첫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준수하기 위해 KRS 508.078의 전문을 아래에 제공합니다. 이 2급 테러 위협 범죄는 중대한 처벌을 수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Class D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KRS 532.060 및 KRS 534.030에 따라 최소 $1,000에서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탄 위협 또는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기타 범죄적 위협과 관련된 소년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아동 또는 그의 부모에게 교육구 또는 긴급 대응자 등에게 위협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KRS 635.060).

KRS 508.078 (2급 테러 위협**)**

1. 다음의 경우, KRS 508.075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은 고의로 2급 테러 위협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학교 행사와 관련하여,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중등학교, 직업학교,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 그룹, 교사, 자원봉사자, 직원, 또는 학교 부지나 학교 승인 활동에 합법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위협이 해당 인물의 학교 고용, 학교 출석 또는 행사와 관련된 경우, 특정 인물이나 학교를 명시하지 않아도 본 조항 위반이 성립됩니다.;

 b) 다음의 목적을 위해, 전자 통신을 포함한 어떠한 수단으로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 학교 건물, 학교 부지 또는 학교 승인 활동의 대피를 유도하는 경우;
 2. 수업이나 학교 승인 활동의 취소를 유도하는 경우; 또는
 3. 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 직원 사이에 심각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는 경우;

 c) 그 또는 그녀가 KRS 508.075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에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d) 법적 권한 없이 KRS 508.075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에 모조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하는 경우입니다.

폭행 및 폭력 위협 – 처벌 및 규정에 대한 통지

KRS 508.078 (2급 테러 위협**,** 계속**)**

2. KRS 522.010에 정의된 공무원이 공식 훈련의 일환으로 배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조 대량 살상 무기는 법적 권한 없이 배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위협을 학교 관계자, 경찰관, 법 집행 기관, 긴급 대응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안전 응답 기관에 전달하면서, 해당 위협을 실제로 한 인물(알려진 경우)을 밝히고, 해당 정보를 진실이라 믿고 무고하게 전달한 경우, 본 조항에 따른 범죄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2급 테러 위협은 D급 중범죄입니다.

교장 선생님 서명:_____ 날짜: _____